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3159호, 20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선출직 임원에 대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선출직 임원의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규정 (안 제4조의2 신설)

1) 선거운동방법을 위반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을 부령에 반영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전화 : 042-481-4394, Fax : 042-472-8960)